

제812차 기술용역타당성 심사결과

- 안 건 명 : 건물에너지효율화 ESCO사업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감리용역
- 심 사 일 : 2013. 8. 13.
- 사업개요
 - 용역비 : 20,650천원
 - 용역기간 : 2013.08.~2013.11.
 - 사업규모 : 태양광 발전설비 218.4kW(제2공학관 옥상 등 5개소) 감리
- 심사결과 : 적 정(조건부)

심사항목	심사내용
1. 용역의 필요성 [자체시행 47개 공종대상여부] □ 대상 ■ 미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발전효율이 극대화 되고 구조적으로 안정된 태양광 모듈 설치와 발전 전력을 상용전력으로의 변환을 통한 전력계통 연계시스템 구축이 중요한바 ○ 외부 전문업체의 기술인력에 의한 공사 감리를 통하여 차질 없는 공정관리가 필요한 사업으로 공사감리 필요성이 인정됨.
2. 용역비 산정의 적정성 - 개략공사비 산정의 적정성 - 소요 기술인력 산정의 적정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용역비 조정 : 16,700천원 - 제619차 학생회관 옥상 태양광발전설비와 동일한 용역비 산출 방법 적용
3. 과업의 내용, 범위의 적정성 등 기타 검토의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용역수행 과정에서 용역비 집행 및 정산관리 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4. 리스크 관리항목 적정성 - 용역자연·중단요인의 관리대책 적정성 - 용역비 증가요인의 관리대책 적정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적정

기술용역 추진시 사전 확인사항

확 인 항 목	세 부 내 용
용역시스템	1. 기술용역관리시스템에 추가 (첨부)등록 ○ <u>용역발주 전 최종 수정된 설계내역서</u> 및 <u>과업내용서</u> 를 <u>기술용역관리 시스템에 추가 등록이 필요하니 결과 통보</u>
입찰전	2.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- 심의절차 이행 -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○ 발주부서 는 개별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 세부기준을 입찰 <u>시행전에 반드시 건설기술 심의절차 이행</u> - 단, 서울시 항목별 세부 평가 <u>기준과</u> 모든사항이 <u>동일한 경우</u> 에는 <u>기술심사담당관과 사전 서면 협의로 건설기술심의 대체</u>
심사 및 심야전 확인	3. 유관부서 의견수렴 - 사업계획 수립시 TF팀 구성 등 관련부서 참여여부 확인 ○ 기술용역타당성 <u>심사</u> 및 건설기술 <u>심의 요청</u> 전 <u>유지관리부서</u> 및 관련(유관)부서 <u>의견 조회 등 의견수렴</u> - <u>사업계획 수립시</u> 계획부서, 공사부서, 유지관리부서 등 TF팀 구성·운영하여 계획단계부터 사업참여 유도 - 유지관리부서 선정여부 등 유지관리방안의 적정성 검토 ※ 행정2부시장 방침 제173호(13.5.22) : 준공예정시설물 점검관련 매뉴얼작성
타당성 조사용역	4. 타당성조사 용역시 과업내용서 반영사항 ○ <u>재원조달방안</u> 및 사업의 <u>타당성 재검증 범위 검토</u> - 타당성조사 용역 수행시 <u>재원조달방안</u> 및 <u>타당성 재검증 검토 시행</u>
용역준공시	5. 기술용역 성과품 공개이행 철저 - 성과품공개 및 자료제공 - 정보소통광장 등록 철저이행 ○ 발주부서 는 '13.7.1부터 준공되는 모든 기술용역 성과품에 대해 정보소통광장(http://www.gov20.seoul.go.kr)등록 및 서울도서관에 제출 - 용역보고서 : PDF파일 변환하여 정보소통광장에 등록(<u>준공시</u>) - 전체성과품 : 인쇄본 3부 및 CD 1부 서울도서관 제출(<u>준공시</u>) · 서울도서관 디지털성과품 표준포맷 기준에 따라 작성 제출 ※ 시장방침 제135호(13.5.24) : 기술용역 성과품 공개 및 관리방안
설계시	6.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등 건설기술 용역 추진시 - 지장물 확인철저 - 지장물로 인한 설계변경 최소화 ○ <u>공사구간내 또는 인접구간의 지하매설물도</u> 는 우리시 통합공간정보서비스 (http://98.33.0.64/gis/index)내 지장물 현황과 비교 검토 - 아울러 지반조사, 현황 측량시에도 수치지형도를 최대한 이용
내진	7. 내진대상 시설물 내진설계 반영여부 ○ 모든 공공건축물(규모관계 없이) 및 지진재해대책법에서 정한 국가하천수문, 교량·터널 등의 내진설계 대상시설물에 대해서는 기본 및 실시설계 시 내진설계를 반영 ※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확인서 작성확인철저(구조기술사)